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16.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16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7. Cp2-E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6.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6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7. Cp2-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</p> <p>①~④(생략)</p> <p>⑤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<u>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<u>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24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</p> <p>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
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</u>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6.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6.(현행과 같음)</p> <p>17. Cp2-E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25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p>
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·⑤(생략)</p>	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·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	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

<p>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A 클래스 · C1 클래스 · C2 클래스 · C3 클래스 · C4 클래스 · C5 클래스 · Ce 클래스 · W 클래스 · I 클래스 · S 클래스 · CG 클래스 · Cp 클래스 · Cp-E 클래스 · S-P 클래스 · Cp2-F 클래스 수익증권</u> 가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나. 30 일 이상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2. <u>Cp2클래스 수익증권</u> : 환매수수료 없음 <p>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(생략)</p> <p>⑤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</p>	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<p><u>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	
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③(생략) ④ <u>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 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③(현행과 같음) <삭제>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월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